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촉구서

1차 촉구 ·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용

수 신		문서번호	
소속 / 직위		통 보 일	년 월 일

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알려드립니다. 아래 지정란에 사용 시기를 적어 이 촉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산정 기준	☐ 입사일 기준 ☐ 회계연도 기준
휴가 산정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발생 일수	일
사용 일수	일
미사용 일수	일
사용 기간 만료일	년 월 일 (이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는 소멸됩니다)

사용 시기 지정 (근로자 작성)

연번	사용 예정일	일수	구분(연차/반차)
1	년 월 일		
2	년 월 일		
3	년 월 일		
합계		일	

년 월 일 근로자 : (서명 또는 인)

년 월 일

회 사 명 :

대 표 자 : (직인)

※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,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.